

수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5443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빈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동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신용보증기금은 2014.경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587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7.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1,371,488,091원 및 그 중 11,920,04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808,814,396원에 대하여는 2014. 9. 22.부터, 550,752,574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각 2015. 4.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신용보증기금은 2019. 12. 3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0. 1.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액은 2021. 7. 15.을 기준으로 원금 1,346,844,96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68,852,040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는 2020. 2.경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들인 피고, F, G가 있었는데, B, 피고, F, G는 2020. 2.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0.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B의 자녀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실질은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종의 계약인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이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B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상속포기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채권최고액 55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0. 9.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채무자 변경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후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 전, 후에 동일하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결국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 제14층 호[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월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977.848㎡

2층 977.848㎡

3층 977.848㎡

4층 977.848㎡

5층 977.848㎡

6층 977.912㎡

7층 977.912㎡

8층 977.912㎡

9층 977.912㎡

10층 977.912㎡

11층 977.912㎡

12층 977.912㎡

13층 977.912㎡

14층 977.912㎡

15층 977.912㎡

16층 977.912㎡

17층 977.912㎡

18층 977.912㎡

19층 977.912㎡

20층 977.9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02.20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 12835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28356분의 122.24. 끝.

